

1. 개정이유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정비 (안 제9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청장으로 각 명칭 변경

나.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갱생보호법 폐지, 현행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내용 등 반영하여 원용 법령, 조문 등 개정

다. 훈계 및 서약서 징구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

공소보류 결정시 훈계 및 서약서 징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조의 표제 “(훈계)”를 “(고지)”로 변경하고, 제1항 본문 중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를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지청장”으로 한다.

제11조 “更生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更生보호회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更生보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